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에
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
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
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삼성KODEXJAPA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02.19 - 2011.02.18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
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
SK증권, 동부증권, 제이피모간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6.01	제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
제36조(운용제한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.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.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.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~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의 이 투자신탁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	① ~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익금이 “零”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	① ~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익금이 “零”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

	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,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이익금이 “零”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 1. 법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	1. 법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제48조(수익자)	① ~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① ~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2010.07.13	제38조(투자신탁보수)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
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항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 대한 영업을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	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 대한 영업을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

	<p>월, 7월, 10월 마지막 일. 2. ~ 4. 생 락 ② ~ ③ 생 락 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 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이익금 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零”보다 적 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 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이익</p> <p>제48 조(수 익자 에 대 한 공 고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 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계 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 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 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을 4. 수익자총회의 결 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 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 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거나, 신탁 계약의 변경에 따른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 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</p>	<p>② ~ ③ 생 락 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 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 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 익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 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 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 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을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 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 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양도·양 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 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 정(모집)할 수 있는 투</p>
--	--	---

	<p>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~ ③ 생 락</p>	<p>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 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 ~ ③ 생 락</p>
--	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